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911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9111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0 선고 2010나2116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2 선고 2009가단23783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우농사업연합회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9.30.선고 2010나21169 판결

판결선고 2011.1.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원심의 판단

가.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연쇄충돌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에 관하여 사고 관련 자동차 중 하나에 대한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삼성화재'라고 한다)가 피해자인 a및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관련 자동차에 대한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하여 피고로부터 위 보험금 중 5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피고가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상호협정(이하'이 사건 구상금협정'이라고 한다)상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른바 '분쟁청구'를 한 결과, 위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피고가 위와 같이 삼성화재에 지급하였던 구상금 중 그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 사고는 관련 자동차 운전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일어났는데, 위 a 및 b의 손해에 대한 원고, 피고 및 삼성화재의 책임비율은 50:25:25라고 평가하였다.

나.나아가 원심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삼성화재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위한 보험자의 지위에서 a 및 b 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운전자를 위한 보험자인 피고에게 구상함으로써 피고가 삼성화재에 그 불머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자 중 위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들 구상의무자 상호간에 사용자와 피용자 등과 같은 대체적인 책임관계 또는 이에 유사한 관계가 있어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과나계에서도 일체를 이루어 구상에 응하여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이른바 '분할채무의 원칙'의 적용으로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라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9.29.선고 2007다89494 판결 참조). 또한 다수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위한 보험자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한 보험자 또는 공제사업자에게 구상한 경우에 그에 응한 보험자 등은 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그를 위한 보험자에 대하여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구상에 응한 부분에 관하여 재구상할 수 없다(대법원 2002.3.31. 선고 2000다6232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삼성화재의 구상에 응하여 지급한 금액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재차 구상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협정 제26조 제2항은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 후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 구상금 분쟁에 관한 제소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이 사건 구상금협정에 따른 구상금분쟁에 관한 제소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이 사건 구상금협정에 따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통상의 법적 쟁송수단으로 그 효력을 다룰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정결정에 좇아 그 내용대로 금전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히 정당한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 지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조정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은 결국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한 보험자로서 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지 이 사건 구상금협정에 따라 상호 부담금을 지급한 것이라고만 평가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구상금협정에 따른 구상금 지급의 효력 또는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취지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여러 사람이 관여한 보험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그 관련자 중 1인을 위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다른 관련자를 위한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하여 그 다른 보험자가 일단 구성에 응하였다면 그 구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하고 또 그와 같은 반환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건, 그 구상문제의 처리에 관하여 이 사건 구상금협정상의

구상금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종국적인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일방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4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채변제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배제되려면 변제자가 변제 당시에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그 내용대로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비채변제에 관한 법리 오해 도는 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대법관 양 대법관 전 주 심 대법관 양